삼산 리버뷰 웰가 입주자 모집공고

■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eitpia.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2.18(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견본주택 운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8)의 익일 2014.12.19(금)매일 10:00부터이며, 인쇄물은 견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0-3)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3.05.31)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축소(85㎡초과 폐지)하고, 적용 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함 (단, 수도권보금자리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를 자격 부여)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함. • 이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형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가점제40%, 추첨제60%)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태화디벨로프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2014년 09월 17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3순위 청약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 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로 명단이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 제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첨 제한 기간 경과 후 당해 청약통장 사용가능). • 신청자격별,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매행위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지역 비투기과열지구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2]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 일부 개정(2012.09.25)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간, 85㎡초과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청약지역 확대 및 지중 우선배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필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1 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12798호 2014. 12. 18(목)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83–1번지외 11필지
- ■ **대지면적 :** 5,040.20㎡ (주거 부분 지분 4,591.6028㎡, 주거 외 부분 지분 448.5972㎡)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2개동 총 2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 **공급대상 :** 총 207세대 (일반특별공급 20세대, 다자녀특별공급 1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세대 포함)

구 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	공급세대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분양	계	최저층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4001372–01	55.9740A	55.9740	20.5017	76.4757	4.3292	27.9828	108.7876	22.2340	15	15	15	2	96	143	7
	2014001372–02	55.5478B	55.5478	20.9103	76.4581	4.3282	27.9763	108.7626	22.0647	2	1	2	1	22	28	2
	2014001372–03	55.5478C	55.5478	20.9103	76.4581	4.3282	27.9763	108.7626	22.0647	3	2	3	1	23	32	2
	2014001372–04	55.5478D	55.5478	20.9103	76.4581	4.3282	27.9763	108.7626	22.0647	0	1	0	0	1	2	1
	2014001372–05	55.5478E	55.5478	20.9103	76.4581	4.3282	27.9763	108.7626	22.0647	0	0	0	1	1	2	1
	공급세대 합계									20	19	20	5	143	207	13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당첨 및 동·호수 배정은 해당 주택형의 모든 동호수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산시 상이할 수 있음.

2 공급가격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층별	동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2015.01.29)	1차 (2015.04.15)	2차 (2015.08.15)	3차 (2015.12.15)	4차 (2016.04.15)	5차 (2016.08.15)	6차 (2016.12.15)	입주시
55.9740 A	2	102동2호	1	109,273	130,427	239,700	11,985	11,985	23,970	23,970	23,970	23,970	23,970	23,970	71,910
		102동3,5호	2	109,273	143,277	252,550	12,628	12,628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75,764
	3	102동1,2호	2	109,273	135,627	244,900	12,245	12,245	24,490	24,490	24,490	24,490	24,490	24,490	73,470
		102동3,5호	2	109,273	144,552	253,825	12,691	12,691	25,383	25,383	25,383	25,383	25,383	25,383	76,148
	4~5	101동5,6호/102동1,2호	8	109,273	140,727	250,000	12,500	12,5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75,000
		101동3호	2	109,273	143,277	252,550	12,628	12,628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75,764
		101동2호/102동3,5호	6	109,273	147,357	256,630	12,832	12,832	25,663	25,663	25,663	25,663	25,663	25,663	76,988
	6~20	101동5,6호/102동1,2호	60	109,273	143,277	252,550	12,628	12,628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75,764
		101동3호	15	109,273	146,847	256,120	12,806	12,806	25,612	25,612	25,612	25,612	25,612	25,612	76,836
		101동2호/102동3,5호	45	109,273	148,887	258,160	12,908	12,908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77,448
55.5478 B	4~5	101동4호	2	109,248	143,302	252,550	12,628	12,628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75,764
		101동1호	2	109,248	147,382	256,630	12,832	12,832	25,663	25,663	25,663	25,663	25,663	25,663	76,988
	6~15	101동4호	10	109,248	146,872	256,120	12,806	12,806	25,612	25,612	25,612	25,612	25,612	25,612	76,836
	6~19	101동1호	14	109,248	148,912	258,160	12,908	12,908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77,448
55.5478 C	2	102동4,6호	2	109,248	143,302	252,550	12,628	12,628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25,255	75,764
	3	102동4,6호	2	109,248	144,577	253,825	12,691	12,691	25,383	25,383	25,383	25,383	25,383	25,383	76,148
	4~5	102동4,6호	4	109,248	147,382	256,630	12,832	12,832	25,663	25,663	25,663	25,663	25,663	25,663	76,988
	6~15	102동6호	10	109,248	148,912	258,160	12,908	12,908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77,448
	6~19	102동4호	14	109,248	148,912	258,160	12,908	12,908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25,816	77,448
55.5478 D	16	101동4호	1	109,248	126,972	236,220	11,811	11,811	23,622	23,622	23,622	23,622	23,622	23,622	70,866
	20	101동1호	1	109,248	128,972	238,220	11,911	11,911	23,822	23,822	23,822	23,822	23,822	23,822	71,466
55.5478 E	16	102동6호	1	109,248	132,012	241,260	12,063	12,063	24,126	24,126	24,126	24,126	24,126	24,126	72,378
	20	102동4호	1	109,248	132,012	241,260	12,063	12,063	24,126	24,126	24,126	24,126	24,126	24,126	72,378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주택형별·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동·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 결과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비주거시설(상업시설 등)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 소유가 아닌 별도로 분양되는 시설임.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3 신청자격, 입주자선정방법

1.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발표 일시/장소	동호수 배정
일반 특별공급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신청일시〉 2014.12.23(화) 10:00~12:00	견본주택방문접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0–3]	유형별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름	〈당첨자선정〉 • 일시 : 2014.12.23(화) 15: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동호수발표〉 • 일시 : 2015.01.02(금) • 장소 : 당사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참조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통사항 가.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선정 및 공고 일시와 관련하여 특별공급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당첨자선정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함.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나.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시 무료처리되며, 특별공급 신청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취소·해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양금 반환시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24)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중 주택공급신청시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신청하시기 바람(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필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1.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소 계
공급 세대수	15	2	3	0	0	20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국가유공자 등)을 받으신 분(단,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제외) –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함.(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 제외) (1)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2)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2.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공급 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소 계
공급 세대수	15	1	2	1	0	19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세대주가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본다.
		5년이상~10년 미만	15	
		1년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처리 : ①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자.				

■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소 계
공급 세대수	15	2	3	0	0	20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의 수는 각각으로 산정)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 임신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함] ② 청약자격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 분	2013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3인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4,606,216 이하	5,102,802 이하	5,357,446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527,459 이하	6,123,362 이하	6,428,935 이하

* 2011년 부터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소득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5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입주자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있는 자.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기간에 출산(임신, 입양포함)한 자녀가있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1)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 *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수에 따라 자녀로 인정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공급 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소 계
공급 세대수	2	1	1	0	1	5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 1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소 계
일반 특별공급	15	2	3	0	0	20
다자녀 특별공급	15	1	2	1	0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2	3	0	0	2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1	0	1	5

■ 일반공급

1.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므로 기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2012.09.25)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됨.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또는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2. 입주자 선정방법 – 층별·동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받음. 3.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주거전용면적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의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19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초과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관련) ※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도 청약신청 가능함.

구 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85㎡초과~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관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간(1, 2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 점 제	40%	–
추 첨 제	60%	10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하단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4호 [별표1])

가 점 항 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가입자본인은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 점	84					
비 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기 준	소유주택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2. 신청시 참고사항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당첨자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선정시 선순위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초과 할 경우 차순위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선정시 주택형별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방법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함(각주택형별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선순위당첨자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자는 당첨일로 부터 2일이내 당사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함.(통보하지않을경우 : 청약신청시 본인이 작성한 인적사항으로 통보가 가능하며,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당첨자공급에서 제외될수있으며,이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할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재사용이 불가함.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의 다자녀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명단 관리함. • 일반공급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아래의「주택소유 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 이루는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이상이 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 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 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함.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 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거주구분	순 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신청일자	청약신청 장소 / 시간
민영 주택 일반 공급	울산 광역시, 경상남도 및 부산 광역시 거주자	1순위	공 통	– 85㎡ 이하 : 가점·추첨제 적용 / 85㎡ 초과 : 추첨제 적용	2014.12.24 (수)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인터넷 뱅킹이용자.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접수시간 : 09:00~17:00
			85㎡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 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1순위자가 된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각주택형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 – 청약신청시 모두가 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2순위		– 접수대상 없음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14.12.26 (금)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 www.apt2you.com 접수시간 : 09:00~17:00

※ 은행방문접수 : 부산은행, 국민은행 및 3순위 인터넷접수 참가은행(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09:00~16:00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 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계약 취소,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당사 일정에 따라 모집함.

■ 3순위 청약신청

장 소	대 상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처리
인터넷접수(www.apt2you.com) 및 은행방문 접수	전 주택형	100만원	– 청약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청약신청금을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동 은행별단 입금계좌로 납부하고 청약자 거래은행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이후 출금계좌로 청약신청금 반환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구 분		내 용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5.01.05(월)]이후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방문 접수	• 청약접수한 참가은행 본·지점(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 지정계좌(청약신청한 시중은행 출금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환불됨.
	인터넷 접수	• 청약자 거래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은행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청약금을 출금 계좌로 환불.
구비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 나이에 관한 공정 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인터넷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KB부동산 →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인터넷청약→청약신청
이용대상	– 1, 2순위 : 청약통장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으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하신 분. – 3순위 : 거래은행인터넷뱅킹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금(100만원)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5 신청방법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주민등록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특별공급 (본인신청시 제출서류)

구비서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신청일에 신청장소에 비치
	청약통장 관계서류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일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배점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출생관련 기본증명서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진단서	•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증은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전원이 표시되어야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별로 제출
	소득 증빙 서류 (아래〈표1〉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직계 존속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직계 존속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직계 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 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

서류 구분	해 당 자 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 급 처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③ 국민연금보험료납입 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직장 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 증명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 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소득금액 증명 원본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소정 양식)	접수장소 비치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시 주요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 및 장소 2. 신청시 참고사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예비당첨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 일시 : 2015.01.02(금) • 장소 : 당사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일시 : 2015.01.07(수) ~2015.01.09(금) • 장소 : 당사견본주택	• 예비당첨자명단은 당첨자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동 · 호수 발생시 예비당첨자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의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단, 동 · 호수 배정에 참가할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동 · 호수 배정방식은 달리 할수있다(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는 동 · 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안내를 위하여 당첨자발표 후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견본주택에서 당첨자 확인

2.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함)후 일반 공급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자는 당첨이 취소 될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 행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40% 가점제, 60%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10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선정시 선순위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 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3.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인터넷 · ARS 이용기간		2015.01.02. ~ 2015.01.09.(8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 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사실 조회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청약자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콜센터1588–9999(서비스번호 : 9–1–3–1주민등록번호 입력)	전자금융공동망1369(서비스 번호 : 5#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01.02(금) 15:00(제공시간은 각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4.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계약금 입금 확인증	계약당일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당첨자의 인감도장	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용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위"계약시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구 비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당첨자의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공급금액 납부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해당동	예금주
공급금액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004–5393–05	101동, 102동	대한토지신탁(주)

5. 발코니 확장

주택형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비 고
확장위치	거실, 주방/식당, 침실2·3	거실, 주방/식당, 침실2·3	거실, 주방/식당, 침실2·3	거실, 주방/식당, 침실2·3	거실, 주방/식당, 침실2·3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6항 5의2, 5의3, 5의4에 의거하여 본 건 분양주택은 선택사항이 없고,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 외부 발코니 창호 제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건축주)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남구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6.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문	각실 출입문	목문상부 마감판/문선/목재문틀(본틀) 및 목재문짝/각종 하드웨어 일체	목재문틀(가틀)/욕실문 하부씰/세대 현관문틀 및 문짝/방화문틀 및 문짝/PL창호
②바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강마루/타일/걸레받이/현관바닥재 및 디딤판/현관마루귀틀/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발코니 바닥배수구 커버	바닥난방배관 +시멘트몰탈 포함(난방배관부위)/발코니 바닥방수/발코니 바닥슬리브
③벽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초배지/벽지/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도장,하지판)/경량벽체/걸레받이/발코니 수전류/발코니 벽도장	시멘트벽돌/단열재/석고보드/월패드/각실온도조절기/발코니난간
④천장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초배지/천정지/반자돌림/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우물천정 몰딩 및 MDF판/발코니 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커튼박스/실내환기용 디퓨즈/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⑤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대리석/천정재/샤워부스/욕실휀/비데/욕실장/욕실거울/욕조/세면대/양변기/수전류/악세사리/재료분리대/욕조하부틀/코킹/바닥배수구/욕실폰/스위치/콘센트/방수/조적	설비배관/전기배관/배선/바닥 슬리브
⑥주방	주방	주방가구(FX판넬 포함)/주방악세사리/주방가전류/벽타일마감/수전류/렌지후드/빌트인제품(주방TV포함)	소방관련시설/주방배기덕트/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⑦일반 가구	현관, 침실2	현관신발장/현관장/현관경 등 가구일체	–
⑧조명 기구외	각실,거실,주방,현관	부착형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일체	전기배관/전기배선/매입박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비 고
마이너스옵션금액	16,151,660	16,147,940	16,147,940	16,147,940	16,147,940	기본선택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수 없으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은 비확장형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함. ※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기타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정보통신,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7. 추가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55.9740A	55.5478B	55.5478C	55.5478D	55.5478E	비 고
공 사 비	2,640,000	2,640,000	2,640,000	2,640,000	2,640,000	제조사 : 삼성전자
설치위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	거실+침실1	거실+침실1	거실+침실1	

※ 모델명 : 실내기(거실)–NJ0521CXB2, 실내기(침실1)–NJ0201CXB2, 실외기(실외기실)–AJX025HNBCA1 ※ 침실1은 안방을 말하며, 계약금액(₩2,640,000)은 공급가액(₩2,400,000)+부가세(₩240,000)의 합계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미신청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위치는 시공상 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사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004–6654–05	대한토지신탁(주)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계약서에 설치가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계약자의 플러스 옵션 설치동의(확인)을 득할 예정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8.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①~②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① 청약자격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 준함.

7 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17년 5월(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등
■ 지구 및 단지 여건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및 버스 등 광역교통망, 유통단지 및 공원조성 개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건축주)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진입로와 출구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차량 출구는 주변 인접 공동주택과 혼용이되므로 출·퇴근시 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30m 도로(정동로) 변 주차동선은 주차 진입만 가능함. • 단지주변 8m 돋질로 367번길은 통행도로가 아닌 막힌 도로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내 진출입로에 기부체납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기관(남구청, 울산광역시청 등)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주변에 상가 지상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 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동출입구 방향 전면에 근린생활 시설 및 복리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자 및 사용자 통행과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조망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측면낙뢰설비 설치에 따른 일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변에 조경시설물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방 환기시스템은 외부 직배기 형식으로 각 세대내 또는 세대층간 주방과 인접한 창호 개폐시 음식물 냄새가 날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수기 및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단지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필로티 내부 및 단지 통행 시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상2층/16층/19층 에 일부 옥상이 설치됨에 따라 방수등 기능 향상을 위하여 창호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무동력휀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하주차장은 근린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예정임. • 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각동 저층세대는 필로티 하부에 운동기구 또는 휴게시설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반사경의 위치나 램프의 형태는 입주자의 편리를 고려하여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남북측에 설치되는 쌈지공원과 휴게쉼터 인접세대는 입주민들의 출입으로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 및 단지내 조경계획에 따라 일부동 및 일부세대에는 입주시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내·외 현장 등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현장여건, 주변현황,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개선, 성능개선,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공법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건축주)가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입주에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평면구성상 동일평형에 한하여 세대 현관 방화문 복도 공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상가시설은 본 아파트 분양과 관계없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층별구성·입주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 옥외시설물, 외부상세계획 등은 향후 디자인의 개선 및 상위 지침변경 등으로 인 · 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층 각동의 주출입구 문의 형태는 미관 및 보완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2~3층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추후 건축허가 변경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창호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 및 지하 터파기, 흙막이 공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고와 기초지정형식 및 지상층의 구조형식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으로의 옥탑의 형태, 옥상난간, 지붕, 측벽, 입면(전후, 측면 일부) 등의 디자인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 및 지상1~3층 화강석붙이기의 형태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등의 형태로 필로티 및 저층부의 돌출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실외기를 구획하는 불연재료의 종류는 시공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를 구획함으로 인한 효율 저하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 및 제공품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법적으로 가재도구적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콘센트나 수전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욕실거울(욕실장) 및 욕조 뒷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씽크대 및 붙박이장 하부와 뒷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건축허가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몰딩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 외부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세대환기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부위의 경우 단열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 · 외의 온도 차이에 의하여 벽체 및 유리창에 결로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마이너스 옵션세대가 상, 하, 좌, 우로 접할 경우 확장부분은 외기(마이너스 옵션세대 발코니)에 면하는 벽체가 되어 단열재가 설치되어야 함으로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시 단지조경 시설물, 식재, 포장 및 미술작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건축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건립세대 내,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또한 당 아파트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추후 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정확한 사전방문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에 입주자사전방문을 실시함
■ 기타 유의사항
• 각 타입별로 빌트인김치냉장고 및 전동식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분양되며, 해당품목 설치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 빌트인김치냉장고와 전동식빨래건조대는 사업주체(건축주) 대한토지신탁㈜ 및 시공사 흥한주택종합건설㈜와 전혀 무관하며 위탁사 ㈜태화디벨로프에서 계약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별도 품목이니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아파트 세대내부 가구(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벽면, 바닥, 천정 등)이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일 수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모형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CG,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스공급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지번으로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별도지번으로의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단위 : 원)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한국감정원	17,943,112,000
중앙감정평가법인	18,144,720,000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포함)까지	36,949,500,000	제01282014–104–00037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얻은 때(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VAT 포함)	사업장 소재지
건축 공사감리	(주)행복건축사사무소	₩536,580,000	울산시 남구 정동로 76번길 3,7층 (삼산동)
전기, 통신 공사감리	탑이앤지(주)	₩116,500,000	울산시 중구 옥교6길 7(학산동)
소방 공사감리	이에스종합기술단	₩15,500,000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48번길 5(광안동, 3층)

■ 사업주체(건축주)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건축주)	시 공 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806(군인공제회관18층, 19층)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신안동, 엘지화재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 – 1492513	161511 – 0006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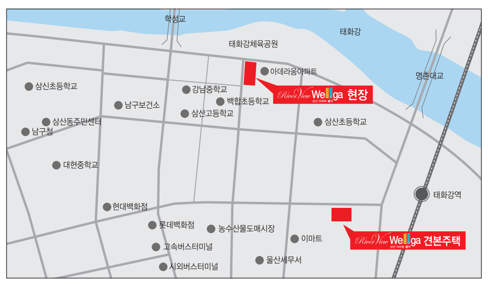

문의) 052.272.2800

아파트 55㎡A(23형) / 55㎡B(23형) / 55㎡C(23형) / 55㎡D(23형) / 55㎡E(23형) 총 207세대

시행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시공 신뢰위의 미래건설 흥한주택종합건설(주)